

경상남도기록원 기간제노동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

경상남도기록원 공고 제2024-2호(2024.4.2.)에 따라 경상남도기록원 기간제 노동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25일

경상남도기록원장

1. 최종 합격자

채용분야	선발인원(명)	최종 합격자 (응시번호)
계	1	
기록물 관리 (기록정보관리 DB구축 등 보조 업무)	1	002

*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계약포기, 선발취소, 계약해지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합격기준에 적합한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(추가합격자 결정 시 해당자 개별 통보, 해당 결원에 별도 채용공고 시 추가합격 없음)

2. 채용을 위한 서류 제출 ※ 본인이 직접 방문 제출, 서식 별첨 참조

○ 제출기한 : 2024. 4. 29.(월) 18:00까지

○ 제출장소 : 경상남도기록원 기획행정과

○ 제출서류

1) 사진(3*4cm) 1부.

2)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 1부.

※ 발급방법 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<https://www.nhis.or.kr>) > 건강in > 나의 건강 관리 > 건강검진정보 >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(직장제출용)

3)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.

4)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.

5) 공정채용확인서 1부.

6) 서약서 1부.

7) 통장(급여지급) 사본 1부.

3. 유의사항

- 발령일은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
- 제출기한까지 서류 미제출 시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
-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 조희,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를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기록원(055-254-4912)으로 문의

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 □에 체크>

<p>1.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*공직자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가.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나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다. 각급 사립학교장 및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임직원</p>	<p>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<p>2. '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'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 *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*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: 비해당 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: 해당</p>	<p>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<p>3-1.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</p>	<p>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<p>3-2.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)</p>	<p>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<p>4-1.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</p>	<p>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<p>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 내)</p>	<p>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<p>4-3. 권익위법('16.3.29. 제14145호로) 시행('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</p>	<p>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<p>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제1항제1호)</p>	<p>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<p>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제1항제2호)</p>	<p>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</p>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.

2024년 월 일

생년월일 . . .

지 원 자

(서명)

공정 채용 확인서

성명 :

생년월일 :

주소 :

상기인은 경상남도기록원 기간제노동자 채용과정에서 채용과 관련하여 본인 또는 친인척 등의 부당한 청탁 및 압력 등의 행위,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 위법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에는 「경상남도 공무원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」 제33조(합격취소 등)에 따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2024년 월 일

본인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경상남도기록원장 귀하

서 약 서

본인은 경상남도기록원 기간제노동자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1.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근무기간중은 물론, 퇴직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해서는 안된다.
2.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.
3. 출·퇴근시간 및 모든 근무수칙을 엄수한다.
4. 우리 부서·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.
5.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 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.

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,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24년 월 일

서약자 :

(서명 또는 인)

경상남도기록원장 귀하